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2388
----------	------------

제안연월일 : 2025년 3월 5일

제안자 : 교육위원장

1. 수정이유

- 제9조제2항은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을 ‘부교육감 또는 평생진로국장’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서울시교육청의 직제명을 고려했을 때 ‘평생진로국장’을 ‘평생진로교육국장’으로 정정이 필요함.

- 「학교폭력예방법」에는 가·피해학생의 치료 및 교육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분리 조치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이 부재하여 상 위법 위임 없이 교육감과 학교장에게 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조례의 입법한계를 벗어날 가능성이 있고,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피해자 분리 조치는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긴급조치 측면에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분리조치 해야하고, 그 기간 역시 7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안 제13조제2항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치료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중에도 서로 마주치지 아니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로 수정함.

2. 주요내용

- “평생진로국장”을 “평생진로교육국장”으로 수정함(안 제9조제2항).

○ “조치하여야 한다” 를 “조치할 수 있다” 로 수정함(안 제13조제2항).

3. 참고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9조제2항 중 “평생진로국장”을 “평생진로교육국장”으로 한다.

안 제13조제2항 중 “조치하여야 한다”를 “조치할 수 있다”로 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신 설></p>	<p>제9조(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생략)</p> <p>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 또는 <u>평생진로국장</u>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③~④ (생략)</p>	<p>제9조(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개정안과 같음)</p> <p>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 또는 <u>평생진로교육국장</u>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③~④ (개정안과 같음)</p>
<p>제8조(피해학생 보호 지원) (생략)</p> <p>1. ~ 8. (생략)</p> <p><신 설></p>	<p>제13조(피해학생 보호 지원) ① (생략)</p> <p>1. ~ 8. (현행과 같음)</p> <p>② 교육감과 학교장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치료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중에도 피해학생의 동의가 없으면 서로 마주치지 아니하도록 <u>조치하여야 한다.</u></p>	<p>제13조(피해학생 보호 지원) ① (개정안과 같음)</p> <p>(개정안과 같음)</p> <p>② 교육감과 학교장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치료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중에도 피해학생의 동의가 없으면 서로 마주치지 아니하도록 <u>조치할 수 있다.</u></p>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제13조로 하고,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로 하며, 제8조의2를 제14조로 한다.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제15조 및 제16조로 하고,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를 각각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로 하며, 제10조의2를 제17조로 한다.

제11조를 제18조로 한다.

제11조의2를 제19조로 한다.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학교폭력예방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서울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추진계획 및 시행에 대한 평가
2.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 선도·보호를 위한 기관, 민간단체와의 협력 방안
3. 그 밖에 학교폭력의 예방 및 지원에 관하여 교육감이 요청하는 사항

② 자문위원회는 교육감이 상정한 안건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건의한다.

제9조(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 또는 평생진로교육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학교폭력 업무담당부서의 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 교육공무원
3. 서울특별시내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장
4.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
5.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하는 학생
6. 경찰공무원
7. 정신보건 전문가 및 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
8. 학교폭력예방 관련기관 종사자
9. 청소년수련시설 대표자·운영자 또는 청소년운영위원회 위원장
10. 학교운영위원회 및 청소년 보호 활동 경험이 풍부한 학부모 대표
11. 판사·검사·변호사
1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13. 그 밖에 학교폭력예방 및 청소년보호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④ 제3항제6호부터 제13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제10조(자문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자문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자문위원회 운영) ①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서울특별시 교육청 학교폭력 업무담당 장학관으로 한다.

③ 그 밖에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중전의 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감은”을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로, “지원할 수 있다”를 “지원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교육감과 학교장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치료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중에도 피해학생의 동의가 없으면 서로 마주치지 아니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학교폭력업무담당자 지원) ① 교육감과 학교장은 학교폭력예방 활동을 하는 학교폭력업무담당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교사의 수업시수 및 업무를 경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폭력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교직원에 대한 지원 및 보호를 위하여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5조(중전의 제16조)제2항 중 “제8조의2”를 “제14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제8조(학교폭력예방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서울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추진 계획 및 시행에 대한 평가 2.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 선도·보호를 위한 기관, 민간단체와의 협력 방안 3. 그 밖에 학교폭력의 예방 및 지원에 관하여 교육감이 요청하는 사항 <p>② 자문위원회는 교육감이 상정한 안건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건의한다.</p>
<p><신 설></p>	<p>제9조(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 또는 평생진로교육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학교폭력 업무담당부서의 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현행	개정안
	<p><u>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서울특별시의회 의원</u> 2. <u>교육공무원</u> 3. <u>서울특별시내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장</u> 4. <u>학생생활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u> 5. <u>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하는 학생</u> 6. <u>경찰공무원</u> 7. <u>정신보건 전문가 및 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u> 8. <u>학교폭력예방 관련기관 종사자</u> 9. <u>청소년수련시설 대표자·운영자 또는 청소년운영위원회 위원장</u> 10. <u>학교운영위원회 및 청소년 보호 활동 경험이 풍부한 학부모 대표</u> 11. <u>판사·검사·변호사</u> 12. <u>「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u>

현행	개정안
	<p><u>전문지식이 있는 사람</u></p> <p>13. 그 밖에 <u>학교폭력예방 및 청소년 보호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u></p> <p>④ <u>제3항제6호부터 제13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u></p>
<p><u><신 설></u></p>	<p>제10조(자문위원의 임기) ① <u>위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u></p> <p>② <u>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u></p>
<p><u><신 설></u></p>	<p>제11조(자문위원의 해촉) <u>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u> 2. <u>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u> 3. <u>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u>
<p><u><신 설></u></p>	<p>제12조(자문위원회의 운영) ① <u>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u></p>

현행	개정안
<p>제8조(피해학생 보호 지원) <u>교육감은</u>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p> <p>1. ~ 8. (생략)</p> <p><신설></p> <p>제8조의2 ~ 제14조 (생략)</p> <p><신설></p>	<p><u>찬성으로 의결한다.</u></p> <p>② <u>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 업무담당 장학관으로 한다.</u></p> <p>③ <u>그 밖에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u></p> <p>제13조(피해학생 보호 지원) ① <u>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 지원하여야 한다.</u></p> <p>1. ~ 8. (현행과 같음)</p> <p>② <u>교육감과 학교장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치료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중에도 피해학생의 동의가 없으면 서로 마주치지 아니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u></p> <p>제14조 ~ 제22조 (현행 제8조의2부터 제14조까지와 같음)</p> <p>제23조(학교폭력업무담당자 지원) ① <u>교육감과 학교장은 학교폭력예방 활동을 하는 학교폭력업무담당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교사의 수업시수 및 업무를 경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p> <p>② <u>교육감은 학교폭력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교직원에 대한 지원 및 보호를 위하여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야</u></p>

현행	개정안
<p><u>제15조</u> (생략)</p> <p><u>제16조</u>(표창) ① (생략)</p> <p>② 교육감은 학교폭력의 예비·음모 등을 관계기관에 신고하거나 <u>제8조의2</u>에 따른 신고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학교폭력의 예방 또는 학교폭력 피해를 줄이는데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단체·공무원·개인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p> <p><u>제17조</u> (생략)</p>	<p><u>한다.</u></p> <p><u>제24조</u> (현행 제15조와 같음)</p> <p><u>제25조</u>(표창)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u>제14조</u>----- ----- ----- ----- ----- -----.</p> <p><u>제26조</u> (현행 제17조와 같음)</p>